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 2020년 5월 18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결혼 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뉴욕주에서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내에 만료되는 주민들에 대해 뉴욕주 내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결혼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60일을 면제하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가족관계법(Domestic Relations Law) 제13항.
- 결혼 허가증에 발행된 기간 내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두 번째 결혼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면제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취득한 기존 결혼 허가증과 동일하게 발급받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가족관계법 제15항.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뉴욕주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결혼 허가증 신청서, 결혼 허가증, 또는 결혼식 입회나 거행은 오디오-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될 권한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는 비디오 콘퍼런스 전 또는 후에 단순히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콘퍼런스 중 법률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디오 콘퍼런스는 부부와 타운 또는 도시 사무직원, 증인 또는 결혼을 거행하는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허가해야 합니다(결혼식에서 서명하거나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의 사전 녹화 동영상 불가). 부부는 자신들이 결혼식 거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뉴욕주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 합니다. 부부는 팩스 또는 전자 수단으로 서명된 문서의 읽기 쉬운 사본을 타운 또는 도시 사무직원, 증인 또는 결혼을 거행하는 사람에게 서명일과 동일한 날짜에 전송해야 합니다. 타운 또는 도시 사무직원, 증인 또는 결혼을 거행한 사람은 전송된 문서 사본에 서명하여 법률에 따라 문서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동일 문서를 다시 전송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는 문서가 가장 기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전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보는 결혼 허가증과 및 결혼식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혼 허가증 신청서 또는 결혼 허가증의 전자 서명 사본은 가족관계법의 목적을 위한 공식 문서가 될 것입니다. 지역 타운 및 도시 사무직원은 해당 관할 지역에서 결혼 허가증 신청 및 발급이 시행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